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국가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군복무 가능성에 따른 국가배상액의 차이를 제거하고,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 명칭 및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안 제2조 제1항)

1)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실무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국가배상에도 적용됨.

2)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2항).

나.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9)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를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의 전복특별자치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군제6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5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육군제8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3군단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각 계속된 것으로
본다.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 명칭 및 관할구역(제8조제2항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중 군단지구배상심의회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서울특별시 일원
육군수도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인천광역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육군제1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1군단 관할구역
육군제2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2군단 관할구역
육군제3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3군단 관할구역
육군제5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5군단 관할구역
육군제31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육군제37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충청북도 일원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원
제9해병여단지구배상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u>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u> ,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 ----- ----- ----- ----- ----- <u>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u>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가소송과	
연 락 처	(02) 2110 - 3207